

제 462 호

1974.10.14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877 호 : 서울특별시 소방업무수수료징수조례..... 3
- 제 878 호 : 서울특별시 원정소년직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 제 881 호 : 서울특별시 원정척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7

◎ 훈 명

- 제 386 호 : 서울특별시 외근소방관근무규정..... 7

◎ 고 시

- 제 143 호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시행허가..... 34
- 제 145 호 : 하천점용및광작물설치허가..... 34
- 제 146 호 : 일단의주택지구성사업시행허가고시..... 35
- 제 147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및 도로) 지적승인..... 36
- 제 14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및 공공공지) 신설및일부변경..... 36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공 고

- 제 197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 38
- 제 199 호 : 도시계획사업(유원지시설)준공경사완료공고 38
- 제 200 호 : 관광호텔종업원자격시험및전형공고 39
- 제 201 호 : 세대분구청장직인개각공고 40
- 제 203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41
- 제 205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42
- 제 209 호 : 74년도서울특별시중기조정면허필기시험합격자공고 ... 45

◎예 규

- 제 277 호 : 행사요원전형기용제운영지침 48

◎사 령 50

조 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소방업무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10월 8일

은 별표와 같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조례 제 877 호

서울특별시소방업무수수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업무등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항목별 수수료액

별표

소방업무수수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징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징수된 허가, 인가 및 검사 신청서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 730 호(1972. 9. 30) 서울특별시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수 수 료 의 명 칭	구	분	수 수 료 액
1. 위험물 임시 저장소 설치허가			500 원
2.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1. 지정수량 10 배 미만		2,000 원
	2. 지정수량 10 배 이상 50 배 미만		3,000 원
	3. 지정수량 50 배 이상 100 배 미만		4,000 원
	4. 지정수량 100 배 이상 200 배 미만		5,000 원
	5. 지정수량 200 배 이상		6,000 원

수 수 료 의 명 칭	구	분	수 수 료 액
3. 위험물저장조 설치허가	1. 육내저장조 가. 지정수량 10 배 미만 나. 지정수량 10 배 이상 50 배 미만 다. 지정수량 50 배 이상 2. 옥외탱크저장조 가. 지정수량 100 배 미만 나. 지정수량 100 배 이상 10,000 배 미만 다. 지정수량 10,000 배 이상 3. 육내탱크 저장소 4. 지하탱크 저장소 가. 지정수량 100 배 미만 나. 지정수량 100 배 이상 5. 간이탱크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저장소	1,500 원 2,000 원 3,000 원 1,500 원 2,000 원 3,000 원 2,000 원 3,000 원 3,000 원 2,000 원 3,000 원 3,000 원	
4.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 3. 일반취급소 가. 지정수량 10 배 미만 나. 지정수량 10 배 이상 50 배 미만 다. 지정수량 50 배 이상 100 배 미만 라. 지정수량 100 배 이상 200 배 미만 마. 지정수량 200 배 이상	5,000 원 1,500 원 2,000 원 3,000 원 4,000 원 5,000 원 6,000 원	
5. 위험물제조소등변경허가			당해 허가수수료
6.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 검사 신청	1.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에 따른 완공검사		당해 허가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명칭	구 분	수수료액
7. 압력시험 (탱크등으로되어 있는것은 1기를 단위로 한다)	2.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1. 증수시험 가. 지정수량 10,000 리터미만 나. 지정수량 10,000 리터이상 1,000,000 리터미만 다. 지정수량 1,000,000 리터이상 2,000,000 리터미만 라. 지정수량 2,000,000 리터이상 2. 수압검사 가. 지정수량 600 리터이하 나. 지정수량 600 리터이상 10,000 리터미만 다. 지정수량 10,000 리터이상 20,000 리터 미만 라. 지정수량 20,000 리터이상	당해허가수수료의 1/4 액 1,000 원 2,000 원 3,000 원 3,000 원에 10,000 리터당 1,000원을가한다 1,000 원 2,000 원 3,000 원 3,000원에 10,000 리터당 1,000원씩을 가산한다.
8. 율중위험물취급주입면허	1. 면허시험 2. 면허증외교부 또는 재교부 3.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300 원 800 원 300 원
9. 율중위험물취급주입적성검사산정		1,000 원
10.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허가	1. 판매업허가 2. 판매업허가 변경	4,000 원 2,000 원

문교부장관의 증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립 청소년직업학교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10. 1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생.

◎서울특별시조례제 878 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정 1965. 2.24. 조례제376호

14사개정 1974.10.10. 조례제878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학교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2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의제1항중 "전임강사와 사무
 직원"을 "전임강사 및 실습조교
 와 사무직원"으로 한다.

제2조제6.항중 "전임강사 및 사무
 직원"을 "전임강사, 실습조교 및
 사무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 칭	위 치
1. 서울남대문국민학교 부설 청소년직업학교	중구남대문로 4 가 45 의 1
2. 서울수송국민학교 부설 청소년직업학교	종로구수송동 146 - 2
3. 서울성동공업고등학교 부설 청소년직업학교	성동구신당동 183.의 1
4. 서울북공업고등학교 부설 청소년직업학교	성북구하월곡동 90 의 1
5. 서울청량공업고등학교 부설 청소년직업학교	동대문구청량리동 3-1
6. 서울공업고등학교 부설 청소년직업학교	영등포구대방동 180
7. 서울공업고등학교 부설 영등포청소년직업학교	영등포구영등포동 5 가 48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법위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10월 12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881 호

서울특별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법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법위
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2. 한강안전관리대요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명

서울특별시의근소방관근무규정을 다
음과 같이 제정한다.

1974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훈령 제 386 호

서울특별시의근소방관근무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방편파출소 또는 소방편출장소(이
하 「파출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방관(이하 「외근소방관」이라 한
다)의 근무(이하 「근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근소방관의 임무) 외근소방
관은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일정한 범위를 분담하여 소방업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근무 관리

제3조(근무관리지침) 서울특별시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의 종류와 방략을 표준화
및 합리화하여 외근소방관이 능
률적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2. 각 기능별 임무를 종합 통제
및 조정하여 근무를 계획성있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출소의 근무요원은 당시 타
에 우선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 4. 파출소의 지역성, 계절성 기타 특수사정을 참작하여 실정에 적응할 수 있는 근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근무에 관한 업무지시는 그 목표, 거간 및 타 기관과의 협조 관계 등을 미리 검토하여 직무수행이 용이하면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외근소방관의 근무의욕을 진작시키고 자발적인 실천력을 촉진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7. 근무수무파로 하여금 근무 감독상의 중점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 감독을 행할 수 있는 파출소의 감독순시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8. 외근소방관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 9. 근무에 관한 파출소의 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지체없이 이불 해결하거나 상급소방관서의 장에게 반영하여야 한다.
- 10. 소방업무에 관한 대민제청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근무에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근무

제 1 절 근무의 종류

제 4 조 (근무의 종류) ① 근무는 기본근무, 특수근무 및 병행근무로 나뉜다.

② 기본근무는 통상적으로 행하는 근무를 말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 1. 망루근무
- 2. 통신근무
- 3. 소내근무 및 대기근무
- 4. 입초 (좌초) 근무
- 5. 장비관리 및 정비근무
- 6. 지리검사
- 7. 수리검사
- 8. 진출물검사
- 9. 동행장검사
- 10. 화재예방검사
- 11. 위험물검사
- 12. 본서출장
- 13. 일과표에 의한 근무
- 14. 파출소의 장의 근무

③ 특수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무를 예정할 수 없거나 파출소에서 전달하기 어려운 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 1. 화재 발생시의 출근임무

2. 화재현장점사 및 진압

3. 특별정계업무

4. 특수장소훈련지도

④병행근무는 기본근무 또는 특수근무를 수행할 때에 병행하여야 할 근무를 말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 1. 위험물단속
- 2. 소방홍보계몽지도
- 3. 소방정보수집

제 5 조 (병행근무의 방법) ①병행근무는 기본근무 또는 특수근무를 수행할 때에 이를 행한다.

②파출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종류의 기본근무 및 특수근무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외근소방관의 근무방법) ①파출소의 장은 주간근무(공휴일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파출소의 장을 제외한 파출소의 외근소방관은 직일근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번근무자를 근무제외에 의하여 순차로 당번근무를 명하거나

대기근무(공휴일포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2 절 근무제외

제 7 조 (근무제외) 파출소의 장은 별지제 1 호서식에 의한 월중세부근무제외표 및 별지제 2 호서식에 의한 일일근무제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외작성상의 유의사항) 파출소의 장이 근무제외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근무제외는 소방서의 출장 등 요일무제외과 소방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저업무 또는 관내의 지역성, 계절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근무제외는 근무의 종류별로 근무할 외근소방관과 근무할 업무 또는 시간을 지정하여 근무예정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3. 근무제외는 외근소방관이 수행할 각 기능별업무를 종합조정하여 근무의 종류별도 작성하고 근무의 표준화와 능률화를 기하여야 한다

4. 근무계획상 목표량은 그 소요시간을 책정하여 근무인원의 1일 및 월중 근무능력시간에 적합하도록 하여 근무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5. 근무계획은 병행근무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근무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6. 근무계획은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비번일 근무를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일일근무) ①파출소의 장은 일일근무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의 긴급 또는 중요지시 사항 및 관할구역내의 돌발사건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파출소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외근소방관의 일일근무의 목표량(시간, 회, 건명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파출소의 장은 근무일지에 근무소방관의 월중 세부근무계획에 의한 일일 근무의 목표량을 기재하고 이에 의하여 근무하게 한다.

④외근소방관은 근무중 취급한 사항을 빠짐없이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파출소의 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일근무를 변경지정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근무일지는 1개월분을 일괄하여 익월 5일까지 소방서장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운행일지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주일분을 일괄하여 결제할 수 있다.

제10조(담당구역의 지정) 파출소의 장은 관할구역을 소속 외근소방관별로 담당구역을 분담 지정하여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되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갑, 을 부 담당구역을 서로 변경하여 전 관할구역의 소방실태를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외근소방관의 동원) 소방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유가 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당번근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이때, 당번 근무자로서 부족할 때에는 비번근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1. 화재경계 및 경보발령시

2. 화재사고발생시

3. 기타 소방업무 수행상의근 소
방관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제 3 절 기 본 군 무

제 12 조 (망루군무) 소방관서의장은
화재발생경계경보 발령시 및 지역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화재
발생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때
에 당번군무자로 하여금 주야를
막론하고 매시간 교대로 화재발
생기발견할 수 있도록 망루내에서
군무를 하게 하여야 하며 망루군
무자는 근무시 다음 각호의 사항
한 유의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내의 상황에 전통하여
야 한다. (시계내의 동명, 지번
지형, 특수건물 및 목표물, 가로
등, 배는 기타 소방상 필요한
사항을 파악)
2. 망루내의 순회시의 시계는 근
방에서부터 원방에 이목을 활용
하여 사방을 감시하여야 한다.
3. 화재발 발견하였을 때에는 속
시 동명, 지번 또는 부근의 목
표를 통신군무자 또는 소내 군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화재의 요인을 방져치가 위하
여 관할구역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통신군무자 또는 소내군
무자에게 그 전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 13 조 (통신군무) 통신군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근무중에는 잡담과 끼임을 금
하여야 하며 근무장소를 이탈하
여서는 아니된다.
2. 전화에 응할 때에는 간단명료하
고 친절히 하여야 하며 소속과
관직명을 먼저 호칭하여야 한다.
3. 불가피한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때에는 대리군무자와 교
대하여야 한다.
4. 각급통신시설을 조석으로 점검
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도록 하여 통신활용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속보, 속보사항은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소내군무) 파출소의 소내
군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
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문서수발 및 부책정리

2. 전화취급 및 속보, 속보사항의 보고

3. 소내에서의 사건취급 및 처리

4. 지리교시 및 제안내

5. 통신, 입초근무자의 근무교대고치

6. 소내의 청소정돈 및 자체경비

7. 철사내의 화기단속 처리 및 감시

8. 교양, 지시 기타 소내에서 행하는 제임무

제 15조 (대기근무) 대기근무는 출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내근무자의 외의 자에게 이를 명하며 대기근무자는 제 26조의 규정에서 정한 일과표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되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야 한다.

제 16조 (입초근무) 입초근무는 소방서 직할파출소에 한하며 입초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시계내의 화재감시
2. 인편전달에 의한 신고수리
3. 소방차량 출동근무시의 교통정리 및 보호
4. 지리교시 및 내방객의 안내
5. 근무중 직연 및 시민과의 잡담금지

6. 자체경비

제 17조 (장비관리 및 정비근무) 당번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운전원은 항상 다음의 소방장비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가. 엔진조절 및 하체부에 대한 점검정비
 - 나. 펌프 및 전동조정상태의 점검정비
 - 다. 배수관 및 반부개폐용부 점검정비
 - 라. 연료 및 각부분 주유상태 점검정비
2. 소방차량 담당운전원 또는 특별히 소방서장이 지정한 자 이외에는 임의로 장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되며 화재출동등 차량운행시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일반 경방요원은 소방호스의 세척, 건조, 수리, 보존, 정돈과 적재비율 및 소방기구의 정돈을 철저히 하여 유사시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 및 정비점검상황은 별지제 4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지리검사) 지리검사는 동명
지선, 간선 및 지선도도의 폭원,
거리, 교통의 상황, 토지의 고저,
건물의 개황 기타 소방상 필요한
지리를 검사함을 말하며 다음 사
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편내지리에 변동된 상황을 검
사 확인하여야 하고 각급 도로
공사, 수도공사와 소방차량 길로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전포의 변동된 상황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즉시 소방서장은
진원에게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수리검사) 수리검사는 소방
용 수리시설 기준에 의하여 소방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리시설
을 검사함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위치의 파악
2. 구조 및 용량
3. 수압, 수질, 감수 여부
4. 지반과 수면과의 거리
5. 토사, 매물 또는 고장어부
6. 소방차의 진입가부

제 20 조 (건축물 검사) 건축물검사는
소방법시행령 제 1 조 및 제 2 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구조와 방화, 소
화, 피난시설 기타 화재예방상 필

요한 사항을 검사함을 말한다.

제 21 조 (홍행장검사) 홍행장검사는
각 홍행장의 방화, 소화, 피난시설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검사함을 말한다.

제 22 조 (화재예방검사) 화재예방검
사는 화재경계지구내의 소방대상물
에 대하여 방화 및 소화시설의
완비여부와 특히 부엌, 온돌, 목욕
탕, 굴뚝, 화로, 전기공작물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검사함
을 말한다.

제 23 조 (위험물검사) 위험물검사는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등
에서의 취급 및 관리상항과 방호
및 소화시설등의 검사 또는 허가
조건에 위반한 사항 및 야적행위
등의 유무를 검사함을 말한다.

제 24 조 (검사요령) 제 18 조, 제 20
조, 제 22 조 및 제 23 조등의 검사
는 별표 1의 방화진단요령에 의거
하여 실시한다.

제 25 조 (동시) 외근소방관의 소방
서출장은 외근소방관의 조회, 문서
배송, 훈련, 교육소집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제 26 조 (일과표에 의한 근무) ① 제
15 조에 규정된 대기근무자는 별

표 2의 일과표에 의하여 제반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백주 토요일을 정비장비기구정비일로 정한다.

제 27 조 (파출소의장의직무) 파출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업무파악
2. 근무계획동의 작성
3. 일일근무 및 목표량의 지정과 근무요령의 지시
4. 조회 및 훈련교양
5. 중요업무의 처리
6. 화재현장에서의 지휘 및 방어 작업
7. 근무의 지도감독 및 확인
8. 근무의 실적파악과 심사분석
9. 근무의 연구개선
10. 방화대책에 대한 대민제동
11. 소속직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의 해결과 상담
12. 인화단결의 조성
13. 관내의 순시와 상황파악

제 28 조 (파출소의장의 준수사항) 파출소의 장은 법령 또는 명령지시 사항을 숙신하여야 하며 계보고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하고 감독

자의 본분을 지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절 특수근무

제 29 조 (화재발생시 출동근무) ① 파출소의 장은 출동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차량으로 당번자중에서 출동인원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출동하여 소화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유고시에는 현장에 있는 최상급 감독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 (화재현장검사) 화재현장검사는 화재발생일시, 장소, 피해액 및 원인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화재조사의 지침에 필요한 참고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 31 조 (특별경계근무) 소방서의 장은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근소방관에게 화재특별경계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방화순찰, 화재경계지구 표정배치 순찰근무등은 이상 전조기, 화재경계경보발령시 연발연시, 명

결일등 화재경제불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2. 감독순시 및 순찰은 소방서장 또는 파출소의 장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32 조 (특별경계근무시의 유의사항)

①전조의 특별경계근무시에는 순찰근무자는 별지제 5 호서식에 의한 순찰표를 순찰함에 삽입하여 순찰할때마다 실시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파출소의 장은 사용을 위한 순찰표를 회수하여 검토확인후 소방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순찰회수 및 화재경제지구 고정배치. 순찰근무시간은 관할구역내의 상황을 참작하여 소방서장이 이를 정한다.

제 33 조 (특수장소의 훈련지도) 소방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 소방훈련지도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1. 화재발생시의 화재정보, 초기소화, 피난유도, 구호, 수리공급등 활동방법
- 2. 자체소방력의 운용방법 및 용

원소방대의 수원방법

- 3. 순찰 및 경비방법

4. 중요물건 및 위험물(방사성 동위원소포함)의 소재와 이의 반출제거 보호방법

- 5. 소방시설의 정비 및 관리취급

- 6. 기타 소방상 유의사항

제 34 조 (훈련지도원의 지정) 소방서장은 특수장소 훈련지도원을 간부 또는 관할파출소의 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5 절 방 행 근 무

제 35 조 (위험물단속) 외근소방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검사 및 법규 위반사실의 유무를 조사 또는 단속하여야 한다.

- 1.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2. 차고, 주차장, 창고
- 3. 타이어수리공장, 서비스공장
- 4. 기타 소방법시행령 제 1 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공장판

제 36 조 (제동지도) 외근소방관은 관할구역내의 주민(자위소방대, 이권이소방대, 민간소화협소반을 포함한다)에게 화재예방 및 초기소화

활동에 협조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지 계몽하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시의 즉각통보에 관한 사항
2. 화재발생의 원인과 대비에 관한 사항
3. 화기단속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4. 자체방화진단과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5. 소화시설정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6. 방화수칙준수 및 방화순찰에 관한 사항
7. 제절적 방화대책 및 복수방화 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방화제동선전상 필요한 사항

제 37 조 (소방정보수집) 외근소방관은 근무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수집하여 소방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소방사범과 그 방지책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 또는 발화시의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방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보 칙

제 1 절 문 서 부 칙

제 38 조 (문서부칙) 파출소에 비치할 문서부칙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같다. 다만, 필요할때에는 참고철을 비치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대장
2. 예 규
3. 소방관계법령집
- 공 안
5. 소방행정
6. 근무일지
7. 차량운행일지
8. 비출대장
9. 수리검사부
10. 화재에 방검사부
11. 기상예보수리전달부
12. 회 로 칙
13. 문서사송부
14. 근무상황카-드
15. 숙 소 제
16. 관 보 칙
17. 각종 중요사항 지시사항기록부
18. 지도방문기록부
19. 경방카-드
20. 각종 검사부

<p>21. 소방훈련계획서철 22. 일일점검표 23. 소방상당일지 24. 참고철</p> <p>제 39조(계획표의 첨부) 월중 세부 근무계획표는 당일분 근무일지 첫장에 일일근무계획표는 당일분 근무일지 첫장에 각각 첨부하여야</p>	<p>한다.</p> <p>제 2절 보고사항</p> <p>제 40조(보고사항) 파출소의 보고사항의 처리는 보고통제규정의 성하는 바에 의한다.</p> <p>부칙</p> <p>이 규정은 1974년 10월 14일부터 적용한다.</p>
---	--

별표 1 방 화 진 단 요 령 (소방검사)

<p>건축물</p>	<p>1. 외 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벽 또는 건물경계가 방화구조로 되어있는가? 2. 창등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필요한 부분에 방화문이 있는가? 3. 목조건축로서 마루밑등 기구에 휴지등의 가연물이 들어가져 않도록 되어있는가? 4. 건물주위에 휴지 위험물-가연물등이 산재되어 있지않는가? 5. 화재발은 불연제로 두껍이 장치되어 있는가. 또는 목조건축에 근접되어 있지 않는가?
	<p>2. 내 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벽 및 천정의 실내에 면한것이 방화상 저장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2. 내부의 구조가 방화적이고 벽체 및 천정정경구에 불연제의 두껍이 장치되어 있는가 3. 타용도와의 경계의 방화구획은 완전한가 4. 각 방화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물류의 기능은 완전한가 5. 급수관, 전선관, 기타관이 방화구획의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틈새가 없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환기, 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풍도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단막(통풍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 기밀은 완전한가. 7. 연락복도를 통행 또는 운반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가. 8. 화기사용기구의 받침대는 불연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주위의 가연물과의 보유거리는 충분한가 9. 목조계단 밑에서 화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가. 10. 작업장부근에서 인화성 화물을 사용 또는 방치하지 않았는가.
3. 소방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화시설기준에 의한 설비는 완비되었는가. 2. 소화시설 비치장소 및 정비상황은 양호한가. 3. 자위소방대 조직상의 임무는 숙지하고 있는가. 4. 자체경비 및 숙직근무는 철저히 하고 있는가. 5. 비상구의 문은 와게식으로 되어있는가. 또는 유사시 개방이 용이한가. 6. 출입구, 비상구, 복도, 계단, 통로에는 통행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7. 비상구에는 소정의 표지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또는 가표지가 용이하게 알 수 있게 되어있는가. 8. 비상구가 출입구까지 가는 사이에 유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9. 옥외 피난계단이 노후 파손되어 있지 않는가. 10. 옥외 피난계 단계 면한 창동의 개구부가 방화적으로 되어 있는가. 11. 가연성 장식용 재료가 유효한 불연재로 처리되어 있는가.

화기 사용 시설	1. 연도화 연동	1. 파손된 개소는 없는지 또는 불연색로 되어있는가 2. 선단이 육외로 충분히 나와있는가 3. 반자(천정) 벽 등의 가연부분에 접근되어 있지 않는가. 특히 굴뚝부는 어떠한가 4. 연소하기 쉬운 불뿔이 걸려있든가 수위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5. 일경식(방열장치)을 사용하였는가
	2. 난로	1. 가연성의 바닥에다 직접 놓여있지 않는가 2. 부근에 인화성, 발화성, 가연성물품이 없는가 3. 기구는 파손된 곳이 없는가 4. 발림대는 충분한 넓이로 되어 있는가 5. 난로수위의 탁상 등과의 거리간격은 충분한가 6. 사용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7. 연동은 확실경고하게 되어 있는가 8. 출입하는 통로에 난로가 놓여있지 않는가
	3. 아궁이. 온돌	1. 설치된 방의 구조는 방화적인가 2. 아궁이 근처에 가연물을 적치하여 있지 않는가 3. 분화구와 벽체는 가연물질로 되어있지 않는가 4. 분화구와 벽체도 쥐구멍이 없는가 5. 새로 온돌장치를 할때에 과일하는 일이 없는가
	4. 보일러 빛 스크립	1. 보일러실은 타처로 연소위험은 없는가 2. 실의 구조는 방화적인가 3. 파손 굴뚝 등은 없는가 4. 안전판이 없는 것이나 불안전한 것은 없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연료는 무엇인가 6. 연료의 적치장은 안전한 곳인가 7. 재의 처리는 안전한가 8. 관제와 벽체와의 사이의 청소는 잘 되어 있는가 9. 스티มป์파이프와 가연물과의 거리는 충분한가
<p>5. 건조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연재로 구성 되어 있는가 2. 사용중 표면온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는가 3. 내부온도를 항상 알 수 있는가 4. 피건조물이 인화물 폭발성 가연성 가스를 발생 하지 않는가 5. 위험물류가 아닌가 또는 가연물이 아닌가 6. 직화물 사용하는가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가 7. 타건속물과의 연소위험이 없는 곳에 있는가
	<p>6. 가스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폐밸브는 조작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가 2. 배관에서 새는 곳은 없는가 3. 고무관이 너무 길거나 노후화되지 않았는가 4. 적당한 차열이 되어 있는가 5. 용기를 실내에다 설치하지 않았는가 6. 직사일광이나 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용기를 놓아두지 않았는가
	<p>7. 석유등 위험물연 료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에서 유류가 새는 곳은 없는가 2. 뱅크는 과도하게 열을 받지 않는가 3. 가연물과의 거리는 충분한가 4. 연료의 적치장은 안전한 곳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연로의 벽면에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가 6. 감유할때 기름이 떨어지거나 탕로판에 보이는 일이 없는가
<p>화기사용 기 구</p>	<p>1. 풍로 (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연물의 반침대위에 놓여 있는가 2. 반침대의 넓이는 충분한가 3. 부근에 장문, 선반, 카펫 등 가연물이 없는가 4. 바람부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가 5. 기구가 파손되지 않았는가 6. 잔화의 처리는 안전한가 7. 주위화 청소정리는 잘 되었는가 8. 부근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가
<p>화기사용</p>	<p>1. 담 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연장소에서 적연하고 있지 않는가 2. 요소 요소에 금연표지는 있는가 3. 종이, 솜, 톱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적연장소가 정해져 있는가 4. 금연구역이나 지정된 부조건물내에서 보행중 적연하고 있지 않는가 5. 침대에서 적연하는 일이 없는가
	<p>2. 제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적장은 어느 곳인가 불연제로 구성되어 있는가 2. 소화용수는 준비되어 있는가
	<p>3. 분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위에 인화성 가연물질이 없는가 2. 바람에 의하여 불티가 비산될 우려는 없는가 3. 소화용수는 준비되어 있는가

		<p>4. 종료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p> <p>5. 감시하는 사람은 있는가</p>
	4. 동화궤불	<p>1. 가연성의 물질이 접촉될 우려는 없는가</p> <p>2. 안전한 받침대를 사용하는가</p> <p>3. 넘어질 우려는 없는가</p>
전기설비	1. 옥 외	<p>1. 합선, 지붕, 빗물, 채양, 간판, 금속성 연통의 지선, 전화선, 안테나, 수목 등에 접촉되어 있지 않는가</p> <p>2. 연결인입선이 옥내를 통과하지 않았는가</p> <p>3. 배선의 노후 탈피된 곳은 없는가</p>
	2. 옥 내	<p>1. 비포장휴스물 사용하는 분전반의 내면이 불연물 질로 되어 있는가</p> <p>2. 분전반 개폐기상자의 금속부분이 금속판 케탈타스, 와이야타스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는가</p> <p>3. 휴스는 철선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p> <p>4. 과대한 용량의 휴스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p> <p>5. 전선과 기기의 접속과 충전부의 보호는 완전한가</p> <p>6. 부하에 충분한 전선이 사용되고 있는가</p>
위험물	1. 저장	<p>1. 무허가, 무신고, 야적운반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p> <p>2. 일반창고 및 보세창고에 유류, 화공약품물 일반 가연물과 혼적보관하고 있지 않는가</p> <p>3. 저장고의 설치상황은 완전한가</p>
	2. 취급	<p>1. 양매 행위 등 불법취급행위는 없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조가공 및 취급장격리 등은 안전한가 3. 시설내의 출입 제한은 하고 있는가 4. 화기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5. 시장경제지구내에 유류, 화학약품을 불법한입입급하고 있지 않은가
대 량 가연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량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수위, 청소정도는 잘 되어 있는가 2. 유분이 침투된 물품은 다물종과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는가 3. 대량 가연물적치는 무너지거나 천정에서 약 1미터 이상 격리해서 쌓여 있는가 4. 화열, 열풍, 질공 기타의 강제방법에 의한 건조설비는 수위가 내화구조의 밖으로 되어 있는가 5. 화기사용금지 또는 장소의 격리는 안전한가
방사성 동위원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장, 취급하는 시설을 내화구조 등의 방화벽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2. R L극독물 세균류물 저장하고 취급하는 부분은 타부분과 방화적으로 구획되어 있는가 3.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관리 및 그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어령 제 33 조 및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별지 제 1 호 서식										
월 중 시 부 근 무 제 비 표										
과 장		서 장								
				인근무		파출소				
근 무 명	세 부 근 무 명	내 용	월 중 무 표 량					시 행 시 간	소 원 별	비 고
			량	단 시	원 간	소 시	요 간			
1. 망 부										
2. 통 산										
3. 입 초										
4. 소 내 및 기										
	가. 소 내 근 무									
	나. 데 기									
5. 일 과										
	가. 장 비 정 비									
	나. 실 무 교 양									
	다. 훈 련									
	라. 작 업									
6. 특 별 경 계										
	가. 경 계 지 구 고 정 지 지									
	나. 방 화 순 찰									
	다. 신 화 순 찰									
	라. 감 독 순 찰									

근무명	세부근무명	내용	원증목포함			시행시간	소관별	비고
			량	당시 시간	소지 시간			
7.소방검사								
	가. 지수터검사							
	나. 건축물검사							
	다. 화재예방검사							
	라. 흥행장검사							
	마. 위험물검사							
8.제공지도								
	가. 수방훈련지도							
	나. 좌담회							
	다. 가무방송							
	라. 흥행장막감염							
9.단속								
	가. 위험물단속							
10.동서								
	가. 조희소집							
	나. 문서제송							
12.파출소장 근무								
	가. 중요업무처리							
	나. 감독순시							

근무인원			일일근무 능력시간			월중근무 능력시간			월 중 총소요시간			대	비
당번	비번	계	당번	비번	계	당번	비번	계	예측 가능	예측 불가능	계	월 중 총 소요시간	월 중 근무능력시간

주 1. 내용란에는 세부근무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한다.
 2. 비교란에는 목표량책정의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3. 목표량의 표시는 시간, 회, 건, 세명 등으로 단위시간은 목표량 단위의 소요시간을 소요시간은 목표량 전부의 소요시간을 기입하여 시간을 중복계산하지 아니할것
 4. 목표량이 예측불가능한것은 실적통계에 의거 예상수로서 책정한다.

별지 제 3 호 하사							
근 무 일 지							
197 요일 천				감독자 소방			
담 권				비 권			
계	급	번호	성 명 인	계	급	번호	성 명 인
소방서장의 진급 또는 중요저시사항							

근 무 지 시 사 람

제 급	성 명	지 시 내 용	제 급	성 명	지 시 내 용

일 일 업 무 통 제 표

문서 수발	화계 발생	건축물 검 사	화재예방 검 사	불안전개소 시 정	지수리 검 사	위험물 단 속	풍 련 지 도	과담회	계 불 신 전	감독 지 시	
접 수	발 송	개시 시간원	개시 시간원	적 시 발 성	미 회 정 수	인 원	인 원	개신회 소원수	인 회 원 수	인 원	주 야

요 목	시 간	근 무 내 용	근 무 자 인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3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 시행 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4 호(74.8.30)로 결정한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법무부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9. 27

서울특별시 장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8 의 9 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공

용의청사), 경찰청청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법무부장관

4. 시행면적: 4,250 평

5. 사업기간:

- 1) 착 수 1974.10.1
- 2) 준공예정일 1975.10.1

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별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주소 및 지번, 지목, 소유권이의 권리명세(별첨)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별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5 호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당시 관할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197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장

허가일	적용장소	수면종류	적용목적	적용면적
74.10.1	영등포구시흥동 601번지앞안양 천	하천	공업용수인수 파이프배설	600㎡ 약 200평
공작물의개요		적용기간	허가물말은자의주소설명	
파이프 배설 φ 300 × 250 mm		적용 허가인로부터 5년간	영등포구시흥동 601번지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사장 김 영 준	
<p>○ 서울특별시고시제 146 호</p> <p>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고시</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을 도시 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 4. 4)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4.10. 4</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처 : 서울특별시관악구신여 남동산 152-1 의 1번지</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p> <p>(3) 사업시행처의주소설명 : 서울지남원 호청장 최 병 삼</p> <p>(4) 시행면적 : 24,600㎡</p> <p>(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가. 착 공 : 74- 나. 준공예정일 : 75-11-30</p> <p>(6)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 명세 (생략)</p> <p>(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권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설명 (생략)</p> <p>(8) 허가내용 : 별첨허가도서 (생략)</p>	

○ 서울특별시고시제 147 호

도시계획시설 (광장 및 도로) 지적승인

1. 수도권 전철역사인 개봉역주변의 도시계획시설 (광장 및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 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10. 7

서울특별시장

가. 광장지적승인조서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영등포구 개봉동 개봉역전역앞	4,230 평	개봉역앞

나. 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중로	2	129	15m	60m	개봉동광장 19호	개봉역앞	개봉역전철 역 진입로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4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및 공공
공지) 신설및일부변경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및

공공공지)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 4) 의 규정에 따라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한다.

◎ 서울특별시 공고제 200호

관광호텔종업원자격시험및전형공고

1974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관광호텔종업원(지배인제외)자격시험 및 전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10. 8

서울특별시 장

-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 1974.10.17-1974.10.23 (공휴일제외)

나. 교부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관광운수국 관광과

- 2.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 가. 시험과목

1) 실기 및 면접시험
현관실무, 식당실무, 객실실무

2) 필기시험
(실기및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한다)

(가) 호텔관리개론 (현관, 식당 및 객실관리에 관한부문)

(나) 관광법규

(다) 관광사업 개론

(라) 영 어

나.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서 만 18세 이상인자.

2) 전형대상자 (필기시험 면제자)
(가) 실업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이수하거나 4년제대학에서 2년이상 관광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자

(나) 외국에서 워하남과 동등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자

3. 시험시행일시 및 장소

가.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1) 일시 : 1974.11.3 09:00

2) 장소 : 추후 서울특별시청후정계시관(이하 "시험계시관"이라 한다)에 공고한다

나. 필기시험(실기및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1) 일시 : 1974.11.10 09:00

2) 장소 : 실기및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시험계시관에 제시한다

4. 합격자 발표일시 및 방법

가. 실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p>1) 발표일시 : 1974. 11. 6</p> <p>2) 방 법 : 시청 게시판에 공고한다</p> <p>나. 최종합격자 발표</p> <p>1) 발표일시 : 1974. 11. 18</p> <p>2) 방법 : 시청 게시판에 공고한다</p> <p>5. 시험방법</p> <p>제 1차 시험은 실기 및 면접을 병합하여 실시하고 제 2차 시험은 재판식선택형과 진위형 필기시험으로 한다</p> <p>6. 제출서류</p> <p>가. 응시원서 (서울특별시 소정양식) 1 통</p>	<p>나. 사진 3매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p> <p>가로 : 3.5 cm 세로 : 4.5 cm</p> <p>다. 학력증명서 1 통</p> <p>라. 주민등록초본 1 통</p> <p>마. 응시수수료 : 1,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첨부한다.</p> <p>※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관광운수국 관광과에 직접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전화 : 75 - 6957)</p>
--	--

◎서울특별시 공고제 201호

서대문구청장직인 개각공고

서대문구청장 직인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각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1974.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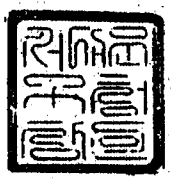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장

1. 개각사용일자 : 1974. 10. 10. 00:00

2. 직인의 인영

경 신 직 인

폐 기 직 인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8 호 (72.7
27) 로 시설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
승아파트 진입도로의 실시계획을 수
령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건설국 건설행
정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
제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9. .

서울특별시장

공 람 계 요

가. 사업시행위치 : 종로구 동승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승아파
트 진입도로

다. 사업규모 : 노폭 8미터
길이 170미터

라.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마. 착수 및 준공예정 : 74.10-

12.31

바. 수급 또는 사용할 토지 :
별첨 명세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첨) 끝

토 지 조 서

물건지 지번	지 부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동승동 129-328	대	1.7		국	
" 129-329	"	0.1		국	
" 129-335	"	0.8	동승동 129-208	유 점 일	
" 129-336	"	0.2	"	"	:
" 129-333	"	0.5	"	"	
" 129-334	"	1.0	12	12	
" 129-332	"	4.7	129의 184	문 제 안	
" 129-330	"	1.8	국	국	

물건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동숭동 129-331	대	4.6	동숭동 국	국	
" 129-325	"	3.2	" 국	국	
" 129-326	"	0.3	" 국	국	
" 129-327	"	0.4	" 국	국	
" 129-318	"	3.1	" 129-129	박 회 탁	
" 219-319	"	7.0	" 129-129	"	
" 129-320	"	5.4	" 129-131	김 봉 용	
" 129-321	"	5.8	" 129-133	김 가 룡	
" 129-322	"	7.0	" 국	국	
" 129-323	"	5.1	보광동 265-815	유 병 열	
" 31-29	"	9.8	" 31-8	박 승 집	
" 31-30	"	4.1	도화동 181-1	남 용 훈	
" 31-31	"	2.5	" 국	국	
" 31-8	"	13	" 국	국	
" 130-65	"	0.3	"		

◎서울특별시 공고 2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77호 (62.12.8)로 시설 결정된 서울특별시 낙원동-종묘간 도로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9. .

서울특별시장

<p>공 략 계 요</p> <p>가. 사업시행위치 : 종로구 낙원동·돈의동·묘동</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낙원동-중요간 소방도로 공사</p> <p>다. 사업규모 : 도로폭 15미터, 연장 240미터</p>	<p>라.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p> <p>마. 착수및 준공예정 : 74.5.1-74. 12. 31</p> <p>바. 수동또는 사용할토지 : 별첨명세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주소청명(별첨)함.</p>
--	---

토 지 조 서

구분	지표시	지 목	지 적	주 소	소 유 자	비 고
	낙원동 103 의 3	도	16.5	낙원동 99 의 1	김숙자.윤자	
	" 103 의 2	도	1	신당동 32 의 8	윤순병.이문태	
	" 104 의 3	대	12.2	" "	" "	
	" 104 의 2	도	42.7	서울시	시	
	" 105 의 2	도	16.4	낙원동 105 의 2	김태두.송중남	
	" 107 의 1	대	14.1	圖	圖	
	" 108 의 4	도	41.2	낙원동 108 의 4	송 중 남	
	" 113 의 2	대	54.5	낙원동 109 의 4	정 연 호	
	" 114 의 2	대	4.4	" "	" "	
	" 113 의 3	도	49.1	견지동 68	윤 명 선	
	" 116 의 3	도	68.6	수유동 249 의 15	전 봉 섭	
	" 117 의 3	대	33.5	圖		
	" 129 의 2	"	3.1	낙원동 128 의 3	김 영 먼	
	" 130	"	13	경운동 130	삼천대남	
	" 131	도	17	운이동 132 의 1	오 선 부	

물건지표시	지 목	지 격	주 소	소 유 자	비 고
낙원동 127 의 2	대	17.2	國		
" 126	대	17	동선동 4가 104	김 정 자	
" 132 의 8	대	6.3	낙원동 132 의 1	오 선 부	
" 126 의 1	도	4.1	서 울 시	시	
" 125 의 2	대	0.8	신설동 131 의 72	이 종 한	
" 132 의 9	대	0.5	낙원동 132	손 성 찬	
돈의동 38 의 2	도	3.2	國		
" 39 의 4	사사지	35	돈의동 3 의 2	기독교동신회	경성포교소
" 39 의 1	도	28.9	낙원동 137	심 상 천	
" 39 의 3	대	5.2	봉익동 132 의 1	한 명 훈	
" 43 의 10	도	39.8	섬수동 1가 488	문 성 윤	
" 43 의 11	대	95.9	익선동 158 의 4	한 명 훈	
" 43 의 9	도	34.4	돈의동 44 의 55	임 태 학	
" 44 의 5	대	51.8	"	"	
" 44 의 7	대	12.9	"	이 길 순	
" 44 의 2	도	14.4	" 44 의 2	박 흥 부	
" 45 의 2	도	28.7	보문동 1가 25의 14	김준길, 박예석	
" 65 의 3	대	1.9	돈 의 동 65	최 재 봉	
" 64 의 2	대	32	연 수 동 63	서 호 연	
" 46 의 2	도	11	서 울 시	시	
" 61 의 1	도	19.8	"	시	
" 60 의 3	도	36	國	국	
" 60 의 2	대	22.8	중앙동 41 의 4	정 형 익	
" 58 의 3	대	55.9	국	국	
" 56 의 2	대	15.2	국	국	
" 57 의 1	도	8.7	묘동 174, 익선동 25	현명균, 김석만	

물건자표치	지 목	지 적	주 소	소 용 자	비 고
은의동 57 의 2	도	10.8	묘동 174.익선동 25	현명균, 김석만	
묘동 170 의 4	도	11	국	국	
" 171 의 1	도	37	국	국	
" 172	도	22.6	묘 동 172	허준희외 7인	
" 173의 4	대	0.6	"	심 현 준	

◎서울특별시공고제 209호

74년도서울특별시 중기조종면
허필기시험합격자공고

74년도 서울특별시 중기조종면허필

기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1974. 10. 12

서울특별시장

1. 필기시험합격자번호

가. 글 작 기

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7	48	49	51	52	53	54	55
57	59	60	61	62	63	64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8	99	100
103	104	105	106	107	(이상 93 명)		

나. 무 다 구 레 이 다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1	212	213	214	215	216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6	(이상 23명)
다. 모 다 스 크 레 파							
301	302	303	304	305	307	(이 상 6 명)	
라. 담 꾸 추 덕							
402	403	405	406	407	408	(이 상 6 명)	
마. 아 스 팔 트 푸 렌 드							
501	503	(이 상 2 명)					
바. 공 기 압 축 기							
601	602	603	604	605	607	608	610 (이상 8명)
사. 토 드 로 라							
701	702	703	704	705	706	707	(이상 7명)
아. 지 계 차							
801	802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5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5	826	829	831
833	834	835	836	837	839	842	844
845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6	857	858	859	860	862	864	865
866	867	869	870	871	872	873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6	887	888	(이 상 67 명.)				

자.믹 사 수 렷							
901	904	906	907	908	909	910	912
913	914	916	917	918	919	920	922
923	924	925	926	927	929	930	932
933	934	935	936	937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이상55명)	

(이상 267명)

2. 필기시험합격자는 1974년 10월 15일 9:00까지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에 출무하여 적성검사를 받을것.

필 기 시 령 결 과 통 계 표

※대비=응시대상:합격

종 별	구 분	응시대상	기 권	응시자	불합격	합 격	비율	비고	
총	계	324	10	314	47	267	82		
계	1	종	149	1	148	20	128	86	
계	2	종	175	9	166	27	139	79	
종 별	기	종	응시대상	기 권	응시자	불합격	합 격	비율	비고
계 1 종	글	착 기	107		107	14	93		
	모	타 구 메 이 다	26		26	3	23		
	모	타 스크 레 파	7		7	1	6		
	담	프 주 렷	9	1	8	2	6		
	계		149	1	148	20	128	86	
계 2 종	아	스 팟 트 부 렌 트	3		3	1	2		
	공	기 압 축 기	10	2	8		8		
	로	드 로 라	7		7		7		
	지	제 차	88	5	83	16	67		
	믹	사 수 렷	67	2	65	10	55		
계		175	9	166	27	139	79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277 호

형사요원전형기용제운영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일정한 자격과 적성을 갖춘 경찰관으로 하여금 형사전형을 거쳐 그 성적 순위에 의하여 형사요원으로 기용되게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과 요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경찰국(이하 "경찰국"이라 한다) 및 산하경찰서의 수사형사(외근형사, 조사, 경비, 병사)요원의 기용에 적용한다.

제 3 조 (전형위원회 설치) 형사요원의 유자격자 기용을 위하여 경찰국에 형사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4 조 (전형위원회 구성) ①전형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두고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경찰국장이, 부위원장은 수사과장 및 형사과장이, 위원은

수사과장, 강력과장, 도범죄장 및 경제과장이, 간사는 지능과장이 된다.

제 5 조 (전형위원회의 임무) 전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사요원의 과부족상황 파악업무
2. 형사전형시험관리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 결정 및 통지 등)
3. 합격자에 대한 경찰대학부설 형사학교 입교 추천 업무
4. 형사요원기용순위결정명부작성과 인사주무과에의 통보업무

제 6 조 (전형시험 응시자격) 형사전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찰경력 3년이상인 자
2.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체가 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함자

제 7 조 (전형시험) ①형사요원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시험은 요원의 결원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실시한다.

②시험 과목은 학과와 슬과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학과는 수사실무,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하고, 슬과는 실기, 담력, 용기, 기민성등을 주로하며 배점은 학과 70점, 슬과 30점으로 한다.

제 8 조 (전형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전형시험을 면제한다.

1. 과거 형사전형시험에 합격사실이 있는자

2. 형사전문교육 4주이상 이수한자

3. 형사 요원으로서 계속 단 2년 근무경력이 있고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 9 조 (형사교육) ① 전형시험 합격자 및 전조제 1항 제 1호의 전형면제자중 교육미이수자는 경찰대학 또는 서울경찰학교에서 순차적으로 형사소경교육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에 의하여 형사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10 조 (고유번호부여) ① 전조의 교육을 수료한 형사 기용예정자에 대하여는 형사교육 성적순위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 8 조 제 2 호 및 제 3 호에 전형면제자에 대하여는 전형의 순위에 우선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고유번호 순위결정은 형사전문교육 성적순위 또는 근무성적명점에 의하여 정한다.

제 11 조 (형사기용순위자 명부비치)

① 전형위원회는 전조에 의한 형사기용 예정자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명부를 경찰국 인사주부과에 통보한다.

② 경찰국 인사주부과는 형사기용 순위자명부를 비치 활용하고 산하 각 경찰서에서는 이에 준한 대장을 비치 활용하도록 한다.

제 12 조 (근부배치) ① 경찰국, 수사,

형사과 및 각경찰서의 형사보충은 소속된 유자격자중 전조에 의한 개별 고유번호의 순위에 의하여 순차 배치한다.

② 소속된 직원중 유자격자가 없을 때는 경찰국 인사주부과에 신청하여 상당 배치한다.

③ 고차적인 수사기술이 요하는 조사전담 요원의 충당은 형사근무자중에서 적격자를 선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형사자격의 상실) ① 형사요

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타부서의 전보와 동시에

형사자격을 상실한다.

-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입건되었을 때
- 2. 취급사건으로 인한 비행으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3. 6개월간의 형사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②전항에 의거 자격을 상실되었을 때에는 고유번호 대장에서 삭제하고 3년 이내에는 다시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74. 9. 19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형사부서에 근무중인자는 이 지침에 의한 전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미이수자는 1975. 6. 30까지 별도의 형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 명

비상계획관실 행정사무관 원지연
서기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비상계획관실
안전담당관에 보함.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관 조용하

서기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문화공보실장에 보함.
1974. 9. 27.
대 통 령

◎1974. 10. 4

지방농림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
근무를 경함.

김영남

홍삼기

지방농림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1974. 10. 5

특도수원지 지방토목
사무소 기사보시보 정인환
본인 임용포기로 인하여 74. 10.
1자 신규임용발령(계 828호)을
동일자로 취소함.

중기관리 지방기계
사업소 기사보 김관수
중기관리 지방기계
사업소 기사보 여운영
지방공무원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p>◎1974.10.7 도시가스 지방행정 김진귀 사업소 서서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p>	<p>서대문구 지방행정 조동욱 서서기 관악구 지방행정 김의수 서서기 성북구 지방행정 신형만 서서기 동대문구파견 (74.10.10-74.11. 30까지) 근무를 명함.</p>
<p>◎1974.10.8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이운복 교수부 사무관 관악구 주택과장에 보함.</p>	<p>◎1974.10.12 성동구 지방행정 신영숙 서서기 운동장 파견 근무를 명함.</p>
<p>◎1974.10.10 일동출장소 지방행정 심상용 주사무사 문화공보실 파견근무를 해촉함.</p>	<p>◎1974.10.13 시립소녀 지방행정 정순애 직업보도소 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74.10.13자 그직을 면함.</p>
<p>중로구 지방행정 김일청 서서기 문화공보실 파견근무를 해촉함.</p>	<p>성북구 지방행정 김정삼 수도사업소 서서기 방호담당관실 파견근무를 해촉함.</p>
<p>도시행정과 지방행정 최명환 주사무사 감사담당관실 파견근무를 해촉함.</p>	<p>◎1974.10.15 지방모독지원보시보에 임함. 김동수 1호봉을 급함.</p>
<p>성동구 지방행정 김기석 서서기 마포구 지방행정 조병하 서서기</p>	<p>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서울특별시